



강 남 구



수신 내부결재

(경유)

제목 향소포기 및 소송종결방침(*****)

다음 소송 사건에서 우리구가 패소하였으나, 검찰의 향소 포기 지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소송을 종결하고자 합니다.

가. 사건개요

- 사 건 명 : ***** (재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)
- 당 사 자 : 원 고 *****
피 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****
- 소 가 : *****원
- 관할법원 : 서울행정법원*****
- 청구취지 : 피고들이 별지 목록 ‘처분일자’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원고에 대하여 한 같은 목록 ‘부과금액’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의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 중 같은 목록 ‘정당한 세액’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(판결문 별지 참조)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- 청구원인 : 원고 *****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에 해당하므로 출자한 지분비율에 해당 감면율을 곱한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.

나. 소송진행사항

- ***** 소장접수일
- ***** 변론기일
- ***** 판결선고(원고승)

다. 판결내용

○ 판결주문

1. 피고들이 별지 목록 ‘처분일자’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원고에 대하여 한 같은 목록 ‘부과금액’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의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 중 같은 목록 ‘정당한 세액’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.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○ 판시이유

1. 이 사건 감면조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·출연한 법인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하여 재산세 등을 감면함으로써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는데 취지가 있기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·출연이 이루어진 법인은 감면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.
2. 출자법인이 상법에 따라 설립되지 아니하더라도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면, 상법상 주식회사의 성격을 갖는 법인으로서 이 사건 감면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.

라. 항소 포기 이유

1. 검찰의 항소포기지휘

동일한 쟁점의 다른 사건 상급심
 (*****
)에서 같은
 결론의 판결을 선고한 바, 항소를 제기하더라도 승소가능성이
 없음

2. 소송비용절감

3. *****
 등은 상고 포기 및 부과취소 진행중이고, *****
 등은 대법원 확정판결 선례에 따라 환급을 완료하였기에 혼란방
 지를 위해 일관성 있는 행정처리 필요

마. 행정사항

- 검찰보고(소송종결보고)
- 추후 소송비용확정결정에 따라 소송비용 지급

